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윤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7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7.

발 의 자 : 윤영석 · 김대식 · 서일준
이종배 · 조정태 · 최형두
곽규택 · 김태호 · 박성민
박대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
되, 계약의 목적, 성질,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
용하고 있음.

특히, 소액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
신속한 계약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중요한 취지를 가
지고 있음. 그러나 일반적인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에
위임되어 수 십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심각한 괴리를 보이고 있
음.

그 결과, 현장에서는 소액 계약마저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행정
비효율이 발생하고,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
가 제약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.

이에 법률에 정부가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,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여,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).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금액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경제 규모, 물가 변동 및 계약 목적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금액 기준의 적정성을 3년마다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의계약 금액 기준 개정에 관한 적용례)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금액 기준을 정하여 대통령령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계약의 방법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④ · ⑤ (생략)</u>	제9조(계약의 방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금액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경제 규모, 물가 변동 및 계약 목적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</u> <u>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금액 기준의 적정성을 3년마다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 <u>⑥ · ⑦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</u>